



우302-701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/ 전화 (042)481-5171 / FAX(042)472-3464
발명정책과 과장 최종협 사무관 이춘무

문서번호 발명 56002 - 221

시행일자 2003. 3. 4.

받 음 변리사 남희섭

참 조

선 람			지 시	
접 수	일자 시간 번호		결 재 · 공 람	
처 리 과				
담 당 자				
심 사 자			심 사 일	

제목 통상실시권설정 재정청구에 관한 결정등본 송달

특허 제261366호 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설정 재정청구건에 관한 결정서등본을
붙임과 같이 송달하며,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
의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: 결정서 등본 1부. 끝.

특 허 청



통상실시권 설정 재정청구 결정서

1. 청구인 :

-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표자 이병도 (631020-1336916)
서울종로구 명륜동 2가 8-4호 2층
- 사단법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자 홍창의(110121-0031436)
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-4호 2층
-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대표자 박균배(710213-1120616)
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-48 신성빌딩 4층
- 대리인 : 남희섭, 박성호

2. 피청구인 :

- 노바티스 아게
스위스 4058 바젤 슈바르츠발달레 215
- 대 리 인 : 양영준, 백만기, 양영환, 박보현

3. 사건의 표시 : 특허 제261366호에 대한 특허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청구

4. 결정 주문 : 이건 재정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5. 결정 이유 :

청구인이 특허 제261366호 발명의 실시물인 글리벡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격도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복용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, '공공의 이익'을 위하여 인도로부터의 수입이 가능하도록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한 때 대하여,

특허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과 청구인 및 피청구인 측 주장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한 결과

첫째, 글리벡을 저가로 수입할 경우 글리벡을 복용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측의 경제적 부담을 많이 완화해 줄 수 있는 반면, 만성골수성백혈병의 경우처럼 전염성 기타 급박한 국가적·사회적 위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발명품이 고가임을 이유로 강제실시를 허용할 경우, 발명자에게 독점적 이익을 인정하여 일반공중의 발명의식을 고취하고,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특허제도의 기본취지를 크게 해손할 수 있는 만큼 강제실시인정여부는 이러한 두가지 상충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당위적인 측면과,

둘째, 현재 모든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(만성기 포함)에게 보험이 적용되며, 이 경우 환자의 실제부담액은 보건복지부가 책정 고시한 약가의 10% 수준인 점, 글리벡의 공급이 현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, 대외무역법 제14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치료목적의 수입이 가능한 점 등 글리벡의 공급실태와 관련된 상황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

본 건의 경우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을 인정할 정도의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03. 2.

특 허 청

